경기리츠1호 다산진건데시앙 장기전세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
[모집공고일 : 2026. 08. 13.]

경기리츠1호 다산진건데시앙은 주택도시기금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출자한 리츠[(주)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경기리츠1호]가 사업을 시행하는 20년 장기전세주택으로, GH[대리인 GH자산관리(주)]는 경기리츠1호로부터 20년 장기전세주택의 임대관리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경기리츠1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초 임대개시일(2022년 9월)부터**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년 거주 이후 임차인에 대한 분양 우선권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본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최초 임대개시일부터 20년이며, 만료 시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으니 최초 임대개시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8.13.(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에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 순위별(1, 2, 3순위)로 청약일자가 다르니 반드시 해당 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예 :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8.24.(월)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8.25.(화)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단독세대주(1인 가구) 신청 가능합니다. (2024.12.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시행)**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자를 말하며, 본인과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형제, 자매)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단독세대주(1인 가구)임
- **선 순위 신청자가 모집 호수를 초과하면** 후 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접수 마감 시 GH주택청약센터에 게시)**
  서류 접수 대상자는 청약신청 현황에 따라 모집호수의 2배수 내외로 발표될 예정입니다.**(배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하며, 가입 은행 오기재 등 모든 오기재 사항에 대해 정정 불가하며, 오기재 시 당첨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장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확인하며,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가점을 판단하므로 사업 주체의 청약통장 조회 시점 이후 변동 사항(청약통장 부활, 추가 납입 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한국부동산원에서 인정하는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오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여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은 GH주택청약센터를 통한 **인터넷 청약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바일청약 불가)**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으로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약자에 한하여 '현장청약접수'를 진행합니다.
- 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모집세대수의 2배수 내외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심사서류 제출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 여건, 주변 환경은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3에 의거 임차권의 양도·전대·알선행위 등은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 각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자는 GH주택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총자산, 자동차 기준 초과 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 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입주 자격 조사 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의 안내

■ **전화 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주소	전화번호
경기리츠1호 진건데시앙 임대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5번길 36 행복나눔센터 102호 임대센터	031-510-4039

■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전세 임대관리센터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공급개요 ····· 4p

2. 공급대상주택 및 조건 ····· 5p

3. 신청자격 ····· 5p

4. 공급일정 ····· 7p

5. 신청방법 ····· 8p

6. 입주자 선정 ····· 10p

7. 신청서류 ····· 12p

8. 당첨발표 및 계약안내 ····· 14p

9.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 14p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산정방법 등 ····· 15p

11. 유의사항 ····· 18p

12.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22p

13.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22p

■ 공사양식 제출서류[붙임1~5] ····· 23~30p

경기주택도시공사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1 공 급 개 요

▌다산진건데시앙 장기전세주택 사업지구 개요

구 분	내 용	위치도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71번길 2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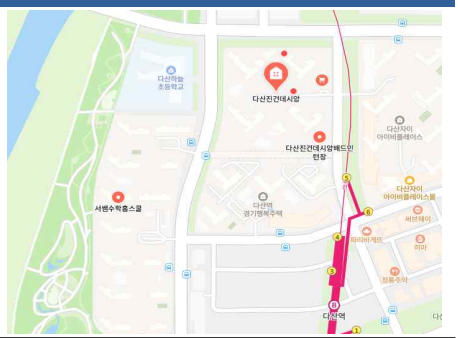
아파트명	다산진건데시앙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1층~29층, 4개동	
공급유형	장기전세 651세대	
주택형(㎡)	72A, 84A, 84B, 84C1, 84C2, 84D	

▌공급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순위별 청약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부적격자 소명 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6.8.13.(목)	'26.8.24.(월) ~ 8.26.(수)	'26.9.17.(목) 17:00 이후	'26.9.21.(월) ~9.28.(월)	소명 대상자 별도통보	'27.3.4.(목) 17:00 이후	공실 발생시 개별 안내

※ 청약신청자는 순위별 청약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반드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격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3.신청자격]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기준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장기전세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순위 100%, 3순위 100% 초과~120% 이하]**
- 자산 : 총자산가액 **41,7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주택관리번호

주 택 명	다산진건데시앙아파트 장기전세주택
주 택 관 리 번 호	2026000392

□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나는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 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발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선택 → 순위확인서 종류 선택([일반공급용] 일반공급)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오프라인 확인 방법 : 청약통장 가입 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 인정 회차 확인

※ 경기리츠1호 다산진건데시앙은 주택도시기금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출자한 리츠[(주)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경기리츠1호]가 사업을 시행하는 20년 장기전세주택으로, GH는 경기리츠1호로부터 20년 장기전세주택의 임대관리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경기리츠1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상세 공급일정, 임대조건, 신청자격 등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급 대상 주택 및 조건

단지명	주택형	주택 타입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보증금(천원)			대기 예비자	모집호수			구조 및 난방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 시)		계	입주자	예비자	
다산 진건 데시앙	72	72A	72.98	23.9	40.27	137.16	269,680	26,968	242,712	8	13	0	13	철근 콘크리트 / 지역난방
	84	84A	84.98	25.90	46.89	157.78	288,550	28,855	259,695	6	41	0	41	
		84B	84.95	27.27	46.87	159.11	288,550	28,855	259,695	14	13	0	13	
		84C1	84.98	26.23	46.89	158.10	288,550	28,855	259,695	10	8	0	8	
		84C2	84.98	26.23	46.89	158.10	288,550	28,855	259,695	8	12	0	12	
		84D	84.95	25.84	46.87	157.66	287,990	28,799	259,191	17	10	0	10	

- 위 임대대상의 면적은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된 면적으로 계약서 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만 구성되며,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은 불가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발생되는 계약 해지 등에 따라 당첨자 발표시점 입주자 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모집호수 총계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향후 계약해지 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청약신청은 **주택타입별(ex.A,B,C,C1,C2,D타입)**로 접수받습니다.
- 당첨자의 당첨 취소,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 등을 대비하여 모집호수의 일정비율만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 예정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에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이며,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확장된 발코니 포함)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공간이나, 세대 전유 공간에 해당되므로 입주자모집공고 유의 사항을 자세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신 청 자 격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3.)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 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세대 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 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기타 각종 사유로 자격검증이 불가한 세대원(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자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 검증은 모집 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단, 임대 주택에 기 거주 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 분리하더라도 중복 입주에 해당하므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세대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자산산정방법은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산정방법 등] 참고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통계청 발표일 ('26.2.26.)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전용면적 60㎡ 초과 : 평균소득 100% (단,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이하까지 신청 가능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없는 가구)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 120%
1인 가구(20%p↑)	4,576,036원 이하	5,338,709원 이하
2인 가구(10%p↑)	6,452,897원 이하	7,626,151원 이하
3인 가구	8,168,429원 이하	9,802,115원 이하
4인 가구	8,802,202원 이하	10,562,642원 이하
5인 가구	9,326,985원 이하	11,192,382원 이하
6인 가구	9,906,263원 이하	11,887,516원 이하
7인 가구	10,485,541원 이하	12,582,649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가구원수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10%)		①‘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②‘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년 3월 28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20%)	
	월평균 소득기준 (100%)	월평균 소득기준 (120%)	월평균 소득기준 (100%)	월평균 소득기준 (120%)
2인 가구(10%p↑)	7,039,524원 이하	8,212,778원 이하	7,626,151원 이하	8,799,405원 이하
3인 가구	8,985,272원 이하	10,618,958원 이하	9,802,115원 이하	11,435,801원 이하
4인 가구	9,682,422원 이하	11,442,862원 이하	10,562,642원 이하	12,323,082원 이하
5인 가구	10,259,684원 이하	12,125,081원 이하	11,192,382원 이하	13,057,779원 이하
6인 가구	10,896,889원 이하	12,878,142원 이하	11,887,516원 이하	13,868,768원 이하
7인 가구	11,534,095원 이하	13,631,203원 이하	12,582,649원 이하	14,679,757원 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 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아래 표의 기준 이하일 것

구분	출생 자녀수	자산 보유 기준 금액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1명	45,900만원 이하	4,996만원 이하
	2명 이상	50,000만원 이하	5,451만원 이하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3년 3월 28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2명 이상	50,000만원 이하	5,451만원 이하
그 밖의 경우	-	41,700만원 이하	4,542만원 이하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
※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과 별도로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합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초과~12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일 경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해당세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합니다.

4 공 급 일 정

■ 공급일정

신청자격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 제출기간	당첨자 발표일	계약 체결기간
		인터넷	현장				
월평균소득 100%이하 (1인 120%, 2인 110%)	1순위	‘26.8.24.(월) 10:00~18:00	10:00~16:00 ※ 만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만 접수가능	‘26.9.17.(목) 17:00 이후 (https://apply.gh.or.kr)	‘26.9.21.(월) ~ 9.28.(월) * 등기우편 제출 ※ ‘26.9.28.(월) 등기우편 소인(접수도장)분까지 유효함 (제출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5번길 36, 행복나눔센터 102호	‘27.3.4.(목) 17:00 이후 (https://apply.gh.or.kr)	공실 발생시 개별 안내
	2,3순위	‘26.8.25.(화) 10:00~18:00					
월평균소득 100%초과~120%이하 (1인 140%, 2인 130%)	1,2,3순위	‘26.8.26.(수) 10:00~18:00					

■ 만65세이상 고령자 · 장애인 현장 접수 일정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현장 청약 접수)

접수일	대상자	비 고
'26.8.24.(월) 10:00~18:00	· 진건B1블록 월평균소득 100%이하 1순위	· 현장접수 예약기간 : '26.8.18(화)~8.21(금) 10:00~17:00 · 현장접수 예약방법 : 임대관리센터 전화예약 · 예약 전화번호 : 031-510-4039 · 현장접수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5번길 36 행복나눔센터 102호 · 주의사항 : 사전예약자에 한함(신분증 및 장애인복지카드 지참)
'26.8.25.(화) 10:00~18:00	· 진건B1블록 월평균소득 100%이하 2·3순위	
'26.8.26.(수) 10:00~18:00	· 진건B1블록 월평균소득 100%초과 ~ 120%이하	

〔신청순위〕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신청순위와 청약납입횟수(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조회 결과 순위가 다를 경우, **부적격 탈락**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 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 접수 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후순위 접수 여부는 순위별 접수 마감일 18:00이후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 게시합니다.
-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 100% 초과~120% 이하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100% 초과~120% 이하로 간주합니다.
- **추후 청약접수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GH주택청약센터 홈페이지 공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 서류들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후 수신 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 호수의 통상 2배수 내외로 선정될 예정(청약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은 순위 확인용으로, 해당 장기전세주택 당첨 후에도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5 신 청 방 법

■ 장기전세주택 신청 안내

■ 청약절차 및 일정

인터넷 청약 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접수 (등기우편접수)	입주자격 조사	당첨자 발표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후]
'26.8.24.(월) ~8.26.(수) 10:00~18:00	'26.9.17.(목) 17:00 이후	'26.9.21.(월) ~9.28(월)	약 5개월 소요	'27.3.4.(목) 17:00 이후	공실 발생시 개별 안내
GH주택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GH주택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우편접수) 임대관리센터	사회보장 정보망	GH주택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부동산 전자계약

※ 청약신청자는 순위별 청약일정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해당 일자에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만65세이상 고령자 · 장애인으로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약자에 한하여 '현장청약접수'를 진행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는 최종 당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심사과정 중 신청자격 결격(탈락) 되거나, 최종 입주자 선정시 최종 커트라인 미달, 전산추첨 등에 의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 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82호, 2022.12.29., 타법 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관련 유의사항**

- 청약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6.9.17.)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서류제출대상조회**
  * 서류제출대상자에 한하여 문자알림 예정(sms수신 동의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미동의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발표 일시 이전에 조회하는 경우 서류심사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나올 수 있음에 유의
  * 대상자 선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이후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해당 서류들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기한 ['26. 9. 21.(월) ~ '26. 9. 28.(월)] 에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받습니다.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6. 9. 28.)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 기한 내 미도달, 서류누락, 기재사항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이 없도록 유의하시고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여 도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에는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오니 부적격 당첨에 따른 당첨 취소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증서(공동/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준비 → GH주택청약센터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① 인증서(공동/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금융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금융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GH주택청약센터 접속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터넷홈페이지(www.GH.or.kr) →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인증서(공동/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인증서 로그인	임대주택-인터넷 청약 클릭	단지 및 주택형 선택	순위선택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인터넷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GH주택청약센터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공급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 신청 가능 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10시부터 18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신청 변경은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청약센터를 통한 신청접수는 **PC 인터넷으로만 가능하고 모바일은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 기준 남양주시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 입력에 따른 당첨탈락, 청약 시 입력 내용과 제출 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접수 방법 (만65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 중 사전예약자에 한함)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 현장접수시 신분증 및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지참 필수
- **현장접수 예약기간** : '26.8.18(화) ~ 8.21(금) 10:00~17:00
- **현장접수 예약방법** : 임대관리센터로 **전화 예약 (전화번호 : 031-510-4039)**
- **현장접수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5번길 36, 행복나눔센터 102호 임대센터
- **현장접수를 위한 필요서류**
  - 청약 신청과 동시에 **필요서류(①신청자 신분 확인서류 및 ②청약신청 구비서류) 모두 구비**해서 현장접수 시 제출

① 신청자 신분 확인서류

구 분	구비 서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청약신청 구비서류 : **"7.신청 서류"에서 확인**

※ 정확한 접수를 위하여 현장접수 시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시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청약 기간에는 극심한 혼잡으로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6 입주자 선정

■ 전용면적 60㎡ 초과

1.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단,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초과 120%이하인 세대(단, 1인 가구 140%, 2인 가구 130%)에게 공급

2. 상기 소득 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신청순위와 청약납입횟수(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조회 결과 순위가 다를 경우 부적격 탈락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평균소득 100%이하가 공급신청서상 월평균소득 100%이하에 선택하지 않는 경우, 100% 초과~120% 이하로 간주되니, 공급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명단은 GH주택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개별통지 및 전화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 자격 해당 여부, 배점 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순위 (1~3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으로 자녀수가 많은 자	➡	남양주시 거주자	➡	배점이 높은 자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시에는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없이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공급신청자 나이(만 나이 기준)	5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② 부양가족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포함), * 「민법」상 19세 미만 또는 만60세 이상인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3인 이상	2인	1인
③ 남양주시 거주기간** *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남양주시 전입일부터 모집공고일(' 26.08.13.)까지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포함, 손자녀) * 미성년 : 2007.8.14. 이후 출생자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손자녀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인 경우에만 인정	3자녀 이상	2자녀	-
⑤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청약신청 접수마감 후 청약홈에 일괄 자료요청하여 배점을 부여 할 예정으로, 청약신청 시 배점항목에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청약신청 접수 시 개인정보 및 청약통장 관련 정보 오기입으로 인하여 청약홈 자료 요청시 검색되지 않는 경우 청약배점은 0점 처리되며, 추후 청약신청납입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0점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회 이상	48회 이상	36회 이상

⑥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⑦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1항)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제조업체 확인 : ①중소기업확인서상 주업종, ②사업자등록증상 업태, ③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에 '제조업' 기재여부
* 근로여부 확인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기준(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종된 사업장은 제외)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그 제조업체 직장가입자에 한함

⑧ 사회취약계층 ※ (1)~(3) 중 중복되는 경우 한 개의 항목만 인정(최대 3점 부여) : 3점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가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자에 한함) 전원에 해당)

(나목)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90%, 2인80%)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단, 보훈청에서 수권자로 인정하는 자에 한함)

(다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목)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동일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자에 한함,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목)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목)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카목) 가목~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3)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점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1년 이상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를 말한다)로 확인된 사람

⑩ GH공사 장기전세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감점 기준	감점 점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 기간산정 기준 : 과거 공사 장기전세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장기전세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장기전세 신청 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양도인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임
* 단, 입주자의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의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차인이 다른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7 신청 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8.13.)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서류 제출방법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이후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해당 서류들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6. 9. 21.(월) ~ '26. 9. 28.(월)] 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6.9.28.)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 우편 및 현장 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발송 주소
(12248)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5번길 36, 행복나눔센터 102호 임대센터
***봉투 겉면에 "경기리츠1호 장기전세 서류제출(신청 주택명)"이라고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서류

NO	구비서류	비 고	발급처
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동의란(2곳) 모두 대상자 전원이 성명을 정자 작성(사인, 도장 불가) 및 반드시 원본 제출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①만65세 이상 노부모부양 가점, ②사회취약계층 가점 중 "노부모부양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서명)을 받아 제출**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되며, 동의서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내용이 없는 경우 부적격(자격검증 불가) 처리됨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신청자 작성 공사 양식 [붙임1~3]

<table>
<tr><td>2</td><td>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td><td>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안 내 사 항</th></tr><tr><td colspan="2">동의서 수집 사유</td><td>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td></tr><tr><td colspan="2">동의서 서명 대상</td><td>세대구성원 전원 서명</td></tr><tr><td rowspan="2">서명</td><td>정보 제공 동의</td><td>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td></tr><tr><td>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td><td>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td></tr><tr><td colspan="2">동의서 유효기간 등</td><td>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td></tr></table>*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td><td></td></tr>
<tr><td>3</td><td>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td><td>•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 필수)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td><td></td></tr>
<tr><td>4</td><td>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td><td>• 당해 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td><td rowspan="4">행정복지센터</td></tr>
<tr><td>5</td><td>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td><td>•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td></tr>
<tr><td>6</td><td>가족관계증명서
(상세)</td><td>• 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만 인정)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해당서류 추가 제출
•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td></tr>
<tr><td>7</td><td>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내용 해당자만 제출></td><td>•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td></tr>
</table>

■ 기타 보완서류(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행정복지센터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사 무소	
기타서류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당첨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7.3.4.(목) 17:00)

- 당첨자 명단은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의 동 · 호는 주택타입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후 계약안내 및 입주 관련 사항은 공가발생시 개별 통보합니다.

■ **계약안내**

- 계약방법 : 전자 계약 (계약기간 : 공실 발생시 개별 안내)
  ※ 현장 계약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개인별 가상계좌는 계약기간 시작일 하루 전에 핸드폰 개별 메시지로 안내 드립니다.
- **계약금은 전자계약 계약마감일 하루 전 입금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전자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납부	【1차】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	【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https://irts.molit.go.kr)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
(고객)	(GH→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고객)	로그인 (휴대폰 / 공동인증서) → 계약체결 (공동인증서) → 계약서 보관/출력 (공인전자문서센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1차」 및 「2차」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중 계약금 입금 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 체결준비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 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는 공가 및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로 변동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9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 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G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⑩ 보유한 분양권 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산정방법 등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조사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일 기준의 계좌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조사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조사일 기준 액면가액 ● 연금저축: 조사일 기준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총자산 산정 시 자산 합계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불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이외 개인 간 사채 인정 불가)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 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행복e음(자활)
		공공 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한국고용정보원(공공)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 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1 유 의 사 항

<table>
<tr><th>관련항목</th><th>유의사항</th></tr>
<tr><td>임대대상
및 조건</td><td>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임대의무기간 만료시에는 입주자격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합니다.
• (갱신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 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table>
<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
<tr><th>최초 갱신계약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th></tr>
<tr><td>10%이하</td><td>100%</td><td>105%</td></tr>
<tr><td>10%초과 30%이하</td><td>105%</td><td>110%</td></tr>
<tr><td>30%초과 50%이하</td><td>110%</td><td>120%</td></tr>
<tr><td>50%초과</td><td>퇴거</td><td>퇴거</td></tr>
</table>
</td></tr>
<tr><td>신청자격</td><td>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td></tr>
<tr><td>공급일정</td><td>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td></tr>
<tr><td>입주자
선 정</td><td>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 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3에 의거하여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된 주택의 계약 해지 시 해당 시설에 적합한 장애인을 포함하는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합니다.
</td></tr>
<tr><td>신청서류</td><td>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배우자 세대 분리는 중복 입주에 해당하므로 본 임대주택 입주 불가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td></tr>
<tr><td>당 첨 자 결 정
및 계약안내</td><td>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td></tr>
<tr><td>기타사항</td><td>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주택은 사업주체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준공후 취
</td></tr>
</table>

	득하는 즉시 사업주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자산보관기관에 신탁됩니다. •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 및 GH는 전세대출 관련하여 별도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 및 '21.10.29에 공고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단지 여건	**계약 전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여건 • 단지 인근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출차주의 등 경보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1층과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문주는 출입구 인근에 1개소 설치되었고, 위치 이동 및 추가 설치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보도, 조경, 주차장 등) 및 대지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소방차전용주차구획 등)로 표기·활용될 수 있으며, 그 위치, 크기 및 모양 등은 추후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현장여건에 따라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폭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소방 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 관계기관 요청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계약 후 관계기관 요청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지상에 노출된 환기시설물은 건축물 특성상 필요시설로써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치 및 높이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를 각 세대와 근린생활시설(상가)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층·호수는 동·호수 배치도를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D/A 등이 저층부 세대에 근접하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배출된 공기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으로 공급되고, 취사용가스는 도시가스에서 공급되며, 관계기관 요청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정압기의 위치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966대가 지하에 설치되고 공동주택 961대(일반주차 638대, 확장형 291대, 장애인 32대), 상가 5대(일반주차 3대, 확장형 2대)입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본 공고문의 면적과 실제 시공 연면적, 용적율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자료의 일부 주동의 위치가 실제와 다르거나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실제와 다르거나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자료의 단지내 데크 형태 및 입면(옹벽, 주차출입구, 커뮤니티 및 판매시설 입면 포함)은 실제와 다르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의 명칭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에 위치한 일부 동은 도로에 인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동 주현관 경사램프와 인접한 일부 세대의 경우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 휴게소, 중앙광장, 옥외운동시설, 주차장 진출입구, 승강기, 각종 기계/환기/공조/전기 설비 등에서 소음, 분진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의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지붕은 입주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으로 인하여 필로티 옆 및 상부층 세대는 외부에서 통행에 의한 소음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의 위치, 모양, 거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과의 연결 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동에 따라 다릅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열교환을 통해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온수로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 및 급탕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 엘리베이터 승강장 지하 부분 홀 및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제연휀이 설치되어 장비 가동시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동 지하 PIT천정 및 벽체는 단열재설치 외 별도의 마감이 없어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 설치로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며,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난간 등 구조물로 인하여 강풍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단지 내부 시설물에 의하여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되거나,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되거나, 조명효과에 의해 눈부심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 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 세대는 일부 조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별 E/V사용은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창 표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실내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설치되는 에어매트 구간은 교목, 관목 등의 식재가 불가하며, 이로인해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추진 과정 및 소방 관련 사용승인 조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
- 각 동별 지하 동 출입구 인근에 배치된 주차계획(확장형 주차, 장애인 주차, 임산부 주차, 경차주차, 전기차 주차 등)의 경우 배치계획에 따라 동별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설비(자립형, 이동충전용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차 충전설비의 기존 설치위치 이동 및 추가 설치는 불가하며, 급속 1개소+완속 4개소가 설치되며, 전기차충전시 대기시간이 장시간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되어 차량도어 개폐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통행시 줄눈 설치부위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정은 도장마감이 아닌 뿜칠로 시공되며,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탑이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바닥은 면적이 넓어 바닥 물청소 시 구배에 의한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눈,비의 영향으로 바닥과 천정에 누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출입시 트렌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 자동차 회전 이동시 마찰음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시설은 입주 전후 한시적으로 입주지원시설(A/S센터 등)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공간 및 옥외 운동시설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실, 경로당, 보육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며, 그 외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 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도로는 보·차도 혼합 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 이동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 평면계획상 부득이하게 단위세대 일부 공간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시설물 관리주체의 필요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공간에 조성되는 수목의 종류, 수량 및 위치, 외부 시설물의 종류, 형태 및 위치 등은 유관기관 요청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계획된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동별로 동일한 수량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며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적정하게 배치되었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 앞에 위치한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대계약 체결 시 변경 수락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수락해야 합니다. • 주거동 외벽 저층부는 화강석 및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고, 일부분에 한하여 외부 수성페인트 마감되나 면적은 동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세탁, 손빨래, 물뿌리기)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실외기실은 건식개념으로 바닥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매립 설치(거실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기준)되며, 침실2, 3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은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각 층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로 시공 또는 단열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앵커못 등을 사용한 견고한 고정방법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보강을 적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주방가구, 화장대,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설치 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바닥마감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비데는 부부욕실에 설치되며, 공용욕실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양변기는 관련법에 의거해 절수형 양변기를 적용하며 일반 양변기에 비해 배출성능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환기용 유니트는 겨울철 결로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가동을 해야 합니다. • 석공사에 쓰이는 사용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VEIN)와 실제 시공된 제품의 색상 및 무늬는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천연석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자재 자체의 특성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다산진건데시앙 102동)에 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새시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 (실외기실은 제외)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동체감지기는 1,2층,최상층에만 설치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일부 시설물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해당시설을 위한 관리는 용도별 분담하여 부담합니다. ■ 기타사항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시행자 및 GH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단지 주변은 향후 사업자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시 향, 조망,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계약해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12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단지명: 다산진건데시앙)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고기밀창호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고효율 자재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13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단지명	사업주체	시공사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다산진건 데시앙	㈜경기리츠공공임대 제1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851-88-01138)	㈜태영건설(105-81-74543) 금호건설㈜(104-81-31309) 코오롱글로벌㈜(120-81-50012) 디엘건설㈜(102-81-34561)	-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408-81-42391) ㈜삼진탑테크엔지니어링(215-81-88868) ㈜유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20-81-05762)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건설되었습니다.

2026. 08. 13.

사업주체 주식회사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임대관리수탁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위대리인 GH자산관리(주) 경기리츠1호장기전세 임대센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행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서명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서명
		본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및 수집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라.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계약자] 5년**

라. 정보주체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각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보유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가입은행,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등)	성명,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나.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및 제공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제2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합니다.

- 수집·이용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보유·이용기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제공 안내

제공받는 자	제공 근거	이용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5(금융정보등의 제공), 6(자료요청), 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각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보유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20 . .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위대리인 GH자산관리(주) 경기리츠1호장기전세 임대센터 귀하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필수)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2)] (서명 또는 인)
본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2 0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예시 참고)

○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여부, 작성년월일'** 란은 **최대한 점선 안에 정자로**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계약자) 및 모든 세대구성원 각자가 자필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금융정보에 대한 조회 특수성을 감안 **특정 일인의 일괄 작성 및 서명은 불가)**

○ 신청자 자신이 조회 대상일 경우 양식 내 1. 신청자 인적사항 과 2. 금융제공 등 제공 동의자 란에 '본인'을 기재 후 **모두 작성**

○ 양식 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2곳 모두 서명 또는 날인**

○ 금융제공 동의서 양식은 **임의로 절대 수정 불가(**만일 추가 세대원 기재가 필요할 경우 동의서를 1장 추가하여 작성)

○ 작성시 연필 또는 연한 볼펜 사용보다는 **선명한 플러스펜**을 사용하기를 권장

○ **만 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작성예시]

1. 점선안에 정자체로 작성하고, 만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가 서명

2. 추가 세대원 기재가 필요한 경우는 동의서 1장 추가하여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필수)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홍길동	501225-1234567
주 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OO로 ~ (주소 끝까지 기입할 것)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2] (서명 또는 인)
본인	홍길동	501225-1234567 010-9999-8888	홍길동	홍길동
배우자	이영희	500122-2107070 010-7777-6666	이영희	이영희
자	홍OO	190515-3333333 - -	홍OO	홍OO
자	홍△△	210420-3333333 - -	홍△△	홍△△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2024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필수)

※ 해당사항이 없어도 아니오 체크 및 서명 후 반드시 제출
※ 구분-[부채]-[임대보증금]이란?임대인으로서 받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 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 아니오 ☐		원	[차주]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위대리인 GH자산관리(주) 경기리츠1호장기전세 임대센터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확 약 서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상기 본인은 경기리츠1호장기전세주택 모집 공고(2026년 08월 13일 공고)에 대하여 GH청약센터에서 진행하는 인터넷 청약신청을 경기리츠1호장기전세 임대센터 직원이 대리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약합니다.

가. 본인은 경기리츠1호장기전세 임대센터에서 본인의 인증정보를 가지고 GH청약센터에 접속하여 청약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며 추후 청약신청서 신청내용에 대한 문제발생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본인은 공고문을 읽고 본인의 가점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였으며, 만약 준비한 서류가 미비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본인은 전산장비 사용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경기리츠1호장기전세 임대센터 직원이 해당 주택에 대한 인터넷 청약접수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것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을 인정하며, 추후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확약자 : (인)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위대리인 GH자산관리(주) 경기리츠1호장기전세 임대센터 귀하

위 임 장

아래 수임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임대하는 「_____장기전세주택」 공급신청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수임인(대리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핸드폰) (유선)

■ 위임인(신청인)

성 명 : (인) (인감또는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핸드폰) (유선)

첨부서류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0 년 월 일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위대리인 GH자산관리(주) 경기리츠1호장기전세 임대센터 귀하